

한국예술종합학교 부설 한국예술영재교육원

2023 예술영재 발굴 아카데미 모집요강

- 사회통합범주 대상 -

‘코로나19’ 등 제반 사정 및 환경에 따라
부득이하게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등이 축소/변경될 수 있으며,
상기와 같이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등이 변경되는 경우
한국예술영재교육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
별도 공지 예정이오니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목 차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과정소개 | 1 |
| II. 모집안내 | 2 |
| III. 접수안내 | 9 |
| IV. 2차 동영상 심사 안내 | 10 |
| | |
| <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식> | 12 |
| 1. 지원신청서 | 12 |
| 2. 자기소개서 | 13 |
| 3. 추천서 | 14 |
| 4. 수상실적증명서 | 15 |
| 5. 개인정보 제공·이용 동의안내 | 16 |
| 6. 체크리스트 | 17 |

I. 과정소개

1 소개

- 예술영재 발굴 아카데미는 예술 분야에 대한 잠재능력 및 창의성을 보유하고 있는 사회통합범주의 청소년을 선발하여 이들의 재능을 발굴하고 우수한 예술가로 양성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국가지원의 집중 심화 교육과정임

2 교육내용

- **교육기간:** 23년 4월 ~ 12월, 매주 토요일(전공에 따라 주중 방과 후 수업 있을 수 있음)
- **교육대상:** 사회통합범주에 속하는 청소년 중 예술에 재능이 있는 자
- **교육분야:** 음악(기악), 무용(발레), 전통예술(기악·성악·무용·연희)
- **교육인원:** 총 40명(음악 20명, 무용 10명, 전통예술 10명)
*모집상황에 따라 분야별 선발인원에 변동 있을 수 있음
- **선발방법:** 서류 및 실기심사
- **교육장소:** 한국예술종합학교
- **수업료:** 전액 무료
- **과정소개:** *아래 과정은 세부 전공별 인원 및 수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| | |
|-------------|--|
| 음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공실기: 전공강사와 1:1실기수업 • 마스터클래스: 국내최고 전문가와 1:1심화수업 • 음악문법: 음악기초이론 • 시창청음: 노래, 연주, 듣기를 기본으로 하는 수업 |
| 무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공실기: 전공강사와 수준에 맞는 기초다지기 • 마스터클래스: 국내최고 전문가와 심화실기 |
| 전통예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공실기: 전공강사와 1:1실기수업 • 마스터클래스: 국내최고 전문가와 1:1심화수업 • 장단실기: 음악과 무용의 기본이 되는 타악기수업 • 기타 전공별 실기수업 |

II. 모집안내

‘코로나19’ 등 제반 사정 및 환경에 따라 부득이하게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등이 축소/변경될 수 있습니다.
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등이 변경되는 경우
한국예술영재교육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별도 공지 예정이오니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 분야 및 선발인원

| 분야 | 단위 | 선발대상 | 인원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|-----------|
| 음악 | 기악 | 사회통합범주의 청소년 중 2005.1.1. ~ 2013.12.31. 출생자 *주민등록상 기준 | 20 |
| 무용 | 발레 | | 10 |
| 전통예술 | 기악·성악·무용·연희 | | 10 |
| 총 계 | | | 40 |

*모집상황에 따라 분야별 인원은 변동 있을 수 있음

2 선발일정

| 구분 | 일자 | 장소 | 내용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지원서 접수 (동영상 제출포함) | 2023.2.1.(수) ~ 2.7.(화) | 홈페이지 다운로드 | 우편접수만 가능 (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 불가) |
| | | 우편제출 | 지원자의 연주 및 무용장면을 녹화한 고화질 영상 제출 |
| 서류심사 | 2023.2.28.(화) ~ 3.10.(금) | 본원 | 제출한 서류에 따른 자격심사 (상황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) |
| 서류 결과발표 | 2023.3.16.(목) | 홈페이지 |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|
| 동영상심사 | 2023.3.17.(금) ~ 3.24.(금) | 한국예술 종합학교 캠퍼스 | 분야별 동영상 심사 |
| 최종합격자 발표 | 2023.3.31.(금) | 홈페이지 | 최종합격자 발표 |

*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3 지원자격 기준

■ 지원자격 구분

| 구분 | 지원자격 |
|-------|--|
| 기회균등 |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자녀,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, 법정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,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인 가구의 자녀,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인 가구의 자녀,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¹⁾ ,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|
| 사회다양성 | 다문화가족 자녀,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, 특수교육대상자 ²⁾ , 도서벽지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, 소년·소녀 가장/조손가족 자녀,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녀, 순직 군경·소방관·교원·공무원 자녀, 한부모가족 자녀, 다자녀가족(3자녀 이상)자녀, 특수직업 종사자 자녀 등 |

기회균등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(권)자 또는 그 자녀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
*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일반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과는 구분
- 보호자 자녀

「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」의 증빙서류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
*소속교에서 '교육지원대상자'임을 확인하는 확인서 제출
- 교육지원대상자 외 「국가보훈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
*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

「국가보훈기본법」 제3조제2호 에 해당되는 지원대상

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3호~18호 및 제73조
- 「보호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~제4조
- 「5.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5조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및 제4조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0호에 근거하여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
-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로 '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' 제출한 자
-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로 '교육비지원확인서' 제출한 자
-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(**학교장 추천서 필수**)

1)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를 이하 '보호자 자녀'라 한다.

2) 지원 당시 「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」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
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법정차상위대상자, 중위소득 50% 및 60%이하에는 포함되지 않으나, 갑작스러운 사유로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·추천한 자 (*아래 추천 요건 참고)

【학교장 추천 대상자 선정 요건】

-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(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)
-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
- 부양의무자의 질병·사고·장애 등으로 인하여 근로 능력이 없거나, 생계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경우
-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·휴업 등에 따른 생계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경우
-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

【증빙 서류 예시】

- 실직급여수급증 사본, 채권압류통지서,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, 폐업확인서, 건강보험료 영수증, 급여명세서, 병원 진단서, 장애인 등록증,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, 아동복지시설 재원증명서 등

사회다양성

사회다양성 필수조건

2022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%이하 가정의 자녀에 한하여 지원 가능

- 건강보험료, 본인부담금 및 재산세 과세 금액은 부모 (※ 이혼한 경우 친부 및 친모) 모두 확인·합산하여 아래 기준표 해당 금액 이하인 가구
 - '지역 가입자'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충족 (※ 재산세 과세내역 확인 불필요)
 - '직장 가입자' 및 '혼합'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및 재산세(주택분) 과세금액 모두 반드시 충족
건강보험료 납입금은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을 기준
 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2022년 4월 건강보험 연말정산금액은 합산에서 제외
 - 재산세(주택분)는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의 재산세 주택 과세 합산금액임
(전국에 소유한 모든 주택(아파트)에 대한 납부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며, 토지, 상가 등에 대해 과세된 재산세는 미포함)

【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%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및 재산세(주택) 과세금액 기준표】

| 가구원수 |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(단위:원) | | | 재산세납부금액 (단위:원)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| 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혼합 | |
| 2인 | 182,739 | 190,860 | 185,461 | 621,840 |
| 3인 | 235,821 | 258,283 | 240,332 | 980,880 |
| 4인 | 287,535 | 320,986 | 296,681 | 1,336,560 |
| 5인 | 350,228 | 386,763 | 370,489 | 1,683,360 |
| 6인 | 398,320 | 435,141 | 434,898 | 2,022,240 |
| 7인 | 473,200 | 511,899 | 511,709 | 2,357,760 |
| 8인 | 511,709 | 549,554 | 567,870 | 2,693,280 |
| 9인 | 567,870 | 602,760 | 663,895 | 3,028,560 |
| 10인 | 663,895 | 684,512 | 850,979 | 3,364,080 |

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
-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「국적법」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- 「국적법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- (예시)** 결혼이민자(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)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- *다문화가정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 지원 자격을 인정함
- *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(모)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음
-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
- 지원 당시 「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」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
- 「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의 거주자로서 도서·벽지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이외 소년·소녀가장 또는 조손가족의 자녀
- 「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」 제2조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의 자녀
- 순직군경, 순직소방관, 순직교원, 순직공무원의 자녀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제1호~제5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
- *이혼으로 인한 '한부모가족 자녀'의 경우에도 친부·친모의 건강보험료, 재산세 납부금액(연간)을 모두 확인·합산하여 지원 자격에 맞는 적격자 추천
- 다자녀가족(3자녀 이상)의 자녀
- *자녀 모두 지원 가능(지원 가능 자녀 수 제한 없음)
- 특수직업 종사자 자녀
- 환경미화원 자녀(시·도 또는 군·구 소속 환경미화원)
- 군인(15년 이상 재직 중인 중령 이하) 자녀
- 경찰(해양경찰)(15년 이상 재직 중인 경감 이하)자녀
- 소방공무원(15년 이상 재직 중인 소방경 이하)자녀

4 지원자격별 증빙 제출서류

■ 공통서류

| 지원유형 | 구분 | 제출서류 | 발급처 |
|--|----|---|------------------|
| 공통서류(총 7종) *지원유형에 상관없이 지원자 모두 제출 | | · 지원신청서 등 [첨부] 서류 일체 ① 체크리스트 ② 지원신청서 ③ 자기소개서 ④ 추천서 ⑤ 개인정보동의서 ⑥ 주민등록등본 ⑦ '부' 또는 '모'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(등본상 부모 중 한 명만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) ※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제출 대상 (다문화가족, 한부모가족, 다자녀가족) | 아래 지원 신청서류 작성 |
| | | | 동주민센터 |

■ 지원유형별 서류

| 지원유형 | 제출서류 | 발급처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---------------------|
|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자녀 | · 수급자 증명서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(지원자 본인 이름의 증명서) | 구청, 동주민센터, 학교(교육청) | |
|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| · 한부모가족 증명서 | 구청, 동주민센터 | |
|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| 교육지원 대상자 ·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서 (지원학생 명의) (또는)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(지원학생 명의) (택1) 교육지원 대상자 외 ·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(지원학생 명의) | 소속학교 (또는) 관할 보훈지청 관할 보훈지청 | |
| 법 정 차 상 위 대 상 자 | 차상위자활 대상자 | ·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| 구청, 동주민센터 |
| |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| ·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| 국민건강보험 공단 |
| |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| ·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| 구청, 동주민센터 |
| | 차상위장애연금 대상자 | ·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| 구청, 동주민센터 |
| |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| · 차상위계층 확인서 | 구청, 동주민센터 |
| 기준중위 소득 50% 이하 60% 이하 | 기준중위소득 50%이하 | ·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| 구청 동주민센터 학교(교육청) |
| | 기준중위소득 60%이하 | · 교육비지원확인서 | 학교(교육청) |
|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중 학교장 추천 | · [첨부] 추천서 양식에 학교장 직인으로 확인하여 제출 | 아래 첨부 서류 | |
| | ·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(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) · 경제적 형편이 곤란함을 증빙하는 기타 제반 서류 -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내역서(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), 채권압류통지서, 법원파산결정문 사본, 폐업확인서, 급여명세서, 병원 진단서, 장애인 등록증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- 부모의 사망, 이혼, 별거, 기출 연락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『학교장 추천서』 또는 『자기확인서』에 동 사실을 명기 - 어느 한 가지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, 재산세 과세 증명 등을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 - 아동복지시설 재원증명서 | 국민건강보험공단 (관할지사) 해당 증빙서류별 확인 가능한 기관 | |

|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|
| 공통서류 (가구 원수별 중위소득 160% 이하) | 지역 건강보험료 | <부·모 모두 제출> •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(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) | 국민건강보험 공단(관할지사) |
| | 직장 또는 혼합 (지역+직장) | <부·모 모두 제출> •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(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) • 재산세 (지방세 세목별) 과세 증명서 - 반드시 '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(전국) '으로 발급받아 제출 (동주민센터 직접 방문 발급, 온라인 발급 불가) | |
| 다문화가족 자녀 | | • 부 또는 모가 귀화한 경우 귀화인의 기본증명서(상세) • 부 또는 모가 외국 국적자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| 해당서류 발급기관 |
|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| | • 북한 이탈 주민등록 확인서 | |
| 특수교육대상자 | | • 특수교육대상자 선정·배치통지서 사본 | |
| 도시·벽지 학교 재학자 | | • 학교세부주소와 재학기간이 명시된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생의 경우, 졸업(예정) 증명서 1부 | |
| 소년·소녀 가장/ 조손가족의 자녀 | | • 사실관계 확인서(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센터 복사사 확인 등) | |
|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| | •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사본 | |
| 순직 군경·소방관·교원· 공무원 자녀 | | • 순직군경, 순직소방공무원, 순직교원, 순직공무원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| |
| 한부모가족 자녀 | | •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| |
| 다자녀 가족 (3자녀 이상) 자녀 | | • 추가서류 없음 (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) | |
| 특수직업 종사자의 자녀 | 환경미화원의 자녀 (시·도 또는 군·구 소속 환경미화원) | • 재직증명서 | |
| | 군인 자녀 (중형이하) | • 15년 이상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| |
| | 경찰(해양경찰) 자녀 (경감이하) | | |
| 소방공무원 자녀 (소방경이하) | | | |

- [첨부] 서류 중 추천서는, 기회균등 '**학교장 추천 대상자**'로 지원할 경우 기관장 추천 필수이며 **그 외 지원자의 경우 교사추천서도 가능합니다.**
 *현재 소속 학교가 없는 경우, 최종 출신학교 장이나 교사의 추천서
 *교육부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경우, 현재 재학 중인 교육부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의 장이나 교육자의 추천서
 - 모든 지원자는 공통서류 이외에 안내된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 - 서류 접수 후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- **건강보험증 사본의 납부자 번호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류상의 납부자 번호가 일치**하여야 합니다.
 *세대주가 본인에게 포함된 모든 세대원의 건강보험료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함
 - 재산세 과세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, 부 또는 모 한쪽의 **재산세 납부사실이 없더라도 부·모 모두의 서류를 제출**하여야 합니다. (재산세가 없음을 증명하여야 함)
 *현재 거주지 이외에 타 지역 소재 주택(아파트)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, 관련 증빙서류를 전부 제출하여야 함
 - 등본 상 부모 한명만 있을 경우, 지원자와 주민등록지가 같은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 -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가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증 사본에 학생만 있거나, 부·모 중 한명만 있는 경우 반드시 다른 한 명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
 - 학생이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납부실적까지 제출
 - **모든 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**여야 합니다.
 - 건강보험증 사본도 30일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(*인터넷발급 가능)
 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인 영수증, 납부확인서 중 택 1
 - 추천서의 경우, 한 달 이내 서류도 가능
 - **최근 6개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**
- ※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지원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.

III. 접수안내

1 지원자 접수

| 접수기간 | 접수방법 | 서류접수(방문)처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|
| 2023.2.1.(수) ~ 2.7.(화) | 우편접수 |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215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영재교육원 208호 (우: 03072) 예술영재 발굴 아카데미 담당자 앞 |

2 지원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

| 구분 |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| |
|-----------|---|---|
| 지원 신청서 | 지원자격 구분 | • 해당 지원 자격 선택 |
| | 실기심사 지원 작품명 | • 실기심사 지원 작품명은 서류 접수 후에 변경이 불가 하므로, 신중히 고민 후 최대한 자세히 기입 (음악분야 지원자는 곡명/작곡자/작품번호 및 악장 모두 기입) |
| | 사진 | • 사진은 2차 실기시험 시 본인 확인용이므로 최근 사진(6개월이내)으로 부착 |
| | 학력사항 | • 학년은 2022년 및 2023년 기준으로 나누어 표기 |
| | 연락처 | • 지원자 및 보호자 연락처, 이메일은 선발기간 중 신속히 연락이 가능한 번호로 기재하며, 변경 시 한국예술영재교육원으로 통보 하여야 함 (02-746-9586, 9588) |
| 기타 특이사항 | • 선발심사 중 신체부자유자 등 장애가 있어 별도의 시험관리가 필요한 경우, 관련사항에 대하여 기입 | |
| 자기소개서 | • 특별한 사유(신체부자유자 등)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, 지원자 본인 자필로 기입 | |
| 추천서 | • 추천서는 기관장 혹은 담임교사(담당교사)가 작성, 출력한 다음 서명(날인)과 직인을 날인하여 인비처리 후 제출 • [기회균등-학교장추천]으로 지원하는 경우, 학교장 추천서 필수 | |
| 체크리스트 | • 지원자가 해당하는 항목에 정확히 기입 | |

기타 유의 사항

- 본 모집요강을 숙지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며, 미기재 또는 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혹은 그 보호자에게 있음
-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였을 경우 선발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사안에 본 교육원 내부규정을 적용하여 사후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전형구분별 증빙서류 제출 시 참가자 및 보호자의 **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번호 뒷자리를 삭제하여 제출**하고, 미삭제 제출 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음
- 지원자는 서류 접수 후 수시로 **한국예술영재교육원 홈페이지 공지**를 확인하여야 함
*홈페이지 확인방법 ① kniga.karts.ac.kr 접속 ② 오른쪽 아래 「예술영재 발굴 아카데미」 클릭 ③ 「모집요강」 클릭 ④ 왼쪽 아래 「선발공지」 확인(개별안내 및 전화안내 하지 않음)
- 개인의 시험성적 등 선발시험 관련 점수는 공개하지 않음

IV. 2차 동영상심사 안내

1 공통사항

- ▶ **제출기간: 2023년 2월 7일(화) 우편 도착 분 까지**
- ▶ **제출자료:** 실기시험 동영상(지원자의 연주 또는 무용 장면을 녹화한 편집하지 않은 고화질 영상)

- ▶ **제출방법:** USB에 저장하여 우편(등기) 제출
 - 아래 표에 따라 해당 장면이 녹화된 **USB로 제출**
 - 우편물 내용에 **지원자 성명/전공/생년월일/녹화한 날짜와 장소/작품명을 정확하게 기재**하여 제출 (*지원신청서에 제출한 작품명(곡명)과 일치하여야 함)
 - 우편사고에 대비하여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발송 영수증 및 수신여부를 확인 바람
우편제출처: (03072)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,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교육원 208호 예술영재 발굴 아카데미 선발 담당자 앞

▶ 동영상 촬영방법 및 유의사항

*** 촬영된 동영상의 영상 및 연주음향, 음성 등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편집 및 보정 행위 등 일체 불가하며 추후이라도 편집 및 보정 행위 등 사실이 확인되거나 발견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아카데미 합격취소 및 이에 상응하는 조치 가능함에 유의 바람**
<예: 레코딩 전문 스튜디오(녹음실, 편집실 포함) 및 이에 준하는 시설과 연주홀, 무대 등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곳에서의 촬영(휴대폰 촬영 포함) 및 편집 등 불가>

- 동영상 촬영은 휴대폰으로만 촬영이 허용되며, 이외의 기기는 사용 불가
 - 캠코더, 태블릿, 디지털 카메라, 액션 캠 등 사용 불가
 - 앱(application) 사용, 편집, 필터링, 보정 등의 작업도 불가하며, 음향관련 기자재(마이크 스피커 등) 및 극장 조명 등 특수조명도 사용 불가
 - *휴대폰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동영상 촬영 기능만을 사용하여야 하며, 그 외 다른 일체의 기능 및 (워터마크 표시 앱 및 표시되지 않는 유료 앱 포함) 사용 절대 불가
- **수험생 얼굴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함<동영상 촬영 중 마스크 착용 금지>**
 - 반드시 수험생 본인이 연주하는 영상이어야 하며, 대리응시 사실이 확인되거나 발견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 가능
- 휴대폰은 고정된 상태에서 가로가 길게 촬영(세로가 길게 촬영하지 말 것)
- 영상은 시작부터 끝까지 중간에 끊지 않고 한 번의 컷으로만 촬영하는 '원 테이크(one-take)' 방식의 촬영만을 허용
- 최종 제출 시 화면 상하 좌우가 반전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촬영되었는지 확인한 후 제출할 것
- 파일재생 오류로 인한 불이익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에게 있음

2 전공별 세부사항

| 구분 | 세부 | 동영상 내용 | 기타사항 |
|-------|---------|---|--|
| 음악 | 기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0분 이내의 편집하지 않은 고화질 연주 영상 모든 곡은 암보로 연주(타악기의 경우 마림바는 암보연주하고 팀파니, 스네어드럼은 악보 보는 것 가능) 전주, 간주는 최소한으로 생략하여 연주 반주가 필요한 곡일 경우, 반주 가능 곡의 반복은 생략하고, 카덴차(Cadenza)가 포함된 곡에서는 반드시 연주할 것(그 어떤 카덴차를 선택하여도 무방) 단, 카덴차의 생략이나 특정 카덴차가 명시된 경우에는 그 지시를 따라야 함 | ·상의: 흰색 또는 검정색 ·하의: 검정색 *교복, 청바지 불가 |
| | 기악 / 성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0분 이내의 편집하지 않은 고화질 연주 영상 반주자 금함 | ·상의: 흰색 또는 검정색 ·하의: 검정색 *한복, 교복, 청바지 불가 |
| 전통 예술 | 무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0분 이내의 편집하지 않은 고화질 작품(무용장면) 영상 연습용 한복 착용 남자: 색상(상,하: 흰색),(고름: 흰색) 여자: 색상(상,하: 흰색),(고름: 흰색), 허리는 끈으로 맬 것 머리모양 남자: 이마가 보이게 단정히 빗어 고정 여자: 앞가르마, 뒷머리는 밑으로 묶어 망으로 고정 | ·머리, 한복에 장식 금함 (금박, 은박, 패치, 꿰자 등 금함) ·패치형 속치마 금지 ·걸치마와 부착된 패치 사용 금지 ·무대분장 금함(색조, 특수화장 금지) |
| | 연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0분 이내의 편집하지 않은 고화질 연주 영상 필요시 반주 가능 | ·한복 또는 사물복 *교복, 청바지 불가 |
| 무용 | 발레 | <세부 동영상 촬영 방법> 1. 촬영 시, 삼각대 사용 권장 2. 카메라는 학생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각도에서 촬영 3. 바에서는 대각선 방향과 정면의 중심에서 촬영하도록 권장 (한국예술영재교육원 홈페이지 아카데미-공지사항 <영상 1> 참고) 4. 센터는 정면에서 촬영을 권장(한국예술영재교육원 홈페이지 아카데미-공지사항 <영상 1> 참고) 5. 동작이나 신체비율의 왜곡이 생기지 않도록 촬영 (예: 카메라 위치가 아래에서 위를 향하는 각도가 되지 않도록 함) 6. 음향 · 별도로 녹음한 다음 영상에 삽입 불가(동작과 음악 사이의 시간차를 방지하기 위함) · 녹음하는 사람(선생님 등)의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함 7. 밝은 낮 시간에 창문 옆에서의 촬영 불가(빛 비침에 의한 형태 왜곡 방지하기 위함) 8. 촬영하는 동안 장소의 조명을 밝게 유지(조명을 모두 켜고 촬영) 9. 촬영은 하루에 할 수 있도록 함 (실제 오디션과 같은 상황에서 촬영하기 위함) 10. 촬영 시 배경 색과 대비되는 연습복 착용(예: 배경과 같은 색의 연습복을 입지 않도록 함) | ·여자: 흰색 레오타드(민소매)/분홍색 발레타이즈, 포인트슈즈(해당 연령에 따라 착용) ·남자: 흰색 레오타드(반팔)/흰색 발레타이즈/흰색 발목양말, 흰색 발레 슈즈 |
| | | <동영상 제출물> · 발레수업(bar¢er&point exercise)에 대한 영상물 · 1분 30초 이상의 Classic Variation을 편집하지 않은 고화질 영상(2005.1.1. ~ 2010.12.31. 출생자는 포인트 슈즈 착용) | |

(*는 필수 표시 항목입니다.)

|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">K ARTS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h2>「예술영재 발굴 아카데미」</h2> <h1>지원 신청서</h1> </div> | | | | | |
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접수번호 | * 수험생 미기재 | | | | |
| *지원자격 구분 |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회균등 | 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다양성 | 수험번호 | * 수험생 미기재 | |
| 지원사항 | *지원분야 <input type="checkbox"/> 음악 <input type="checkbox"/> 무용 <input type="checkbox"/> 전통예술 | <input type="checkbox"/> 세부전공 | * 무용분야의 경우 발레 기재 | *생년월일 | . . . |
| 지원자 인적사항 | *성 명 | | *실기 심사 지원 작품명 (작곡가/곡명/작품번호/악장) | | *사진 (3*4) 6개월 이내 사진 (2차 실기시험 본인 확인용) |
| | | | * 무용분야의 경우 기재하지 않음 | | |
| *학력사항 | 학력구분 (원서접수 마감일 기준) | | <input type="checkbox"/> 재학중 <input type="checkbox"/> 비 재학중 (최종 재학학교명:) | | |
| | 학교사항 | 학 교 명 | 2022년 2023년 | 학 년 | |
| *연 락 처 | 휴대폰번호 | E-mail | 주 소 | | |
| *지 원 자 | | | | | |
| *보 호 자 | * 상시 연락 가능한 번호 입력 | | *보호자 성명 | *관계 | |
| *아카데미 기존 지원여부 |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| | |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| |
| 기타 특이사항 | | | | | |
| 본인은 한국예술영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「예술영재 발굴 아카데미」에 응시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. | | | | | |
| 20 년 월 일 | | | | | |
| 지원자 | | 성명 | | (서명) | |
| 보호자 | | 성명 | | (서명) | |
| <h3>한국예술영재교육원장 귀하</h3> | | | | | |

☺ 예술영재 발굴 아카데미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☺

※ 해당 항목에 체크하시고, 본 서류를 맨 앞장으로 하여 자격별 서류를 체크리스트 순서대로 정리 후 지원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.

| 접수번호 | ※ 수험생 미기재 | 지원자 | 분야 | 학년 | ※ 2023년 기준 | 성명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표시 공통제출서류 | | | | | | |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전 가족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 | | | | | | |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가족관계증명서 1부 (등본상 부모 중 한 명만 있을 경우 그 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제출) | | | | | | | |
| 기회균등 | | | 사회다양성 | | | | |
| 구분 | 표시 | 제 출 서 류 | 구분 | 표시 | 제 출 서 류 | | |
| 기초생활수급자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· 수급자증명서(지원학생 명의) | 공통 제출 서류 | 지역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부·모 모두 제출> ·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·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(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에 관한 영수증, 고지서, 납부확인서 중 택1) | |
|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·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(지원학생 명의) | | | 직장 및 혼 합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<부·모 모두 제출> ·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·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(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에 관한 영수증, 고지서, 납부확인서 중 택1) |
|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· 한부모가족증명서 |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| <부·모 모두 제출> · 재산세(지방세 세목별) 과세 증명서 - 반드시 '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(전국)'으로 발급받아 제출(동주민센터 직접 방문 발급, 온라인 발급 불가) | |
| 국유공자녀 교육지원대상자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·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서(지원학생 명의) (또는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(지원학생 명의) (택1)) | | 다문화가족의 자녀 |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· 부 또는 모가 귀화한 경우 귀화인의 기본증명서(상세) · 부 또는 모가 외국 국적자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|
|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대상자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·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(지원학생 명의) | 북한 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|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·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| |
| 법적 차상위 계층 | 차상위 자활대상자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·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| | 특수교육대상자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· 특수교육대상자 선정·배치통지서 사본 |
| |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·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| | 도시·벽지학교 재학자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· 학교세부주소와 재학기간이 명시된 재학증명서 |
| |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·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| | 소년·소녀 가장, 조손가족의 자녀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· 사실관계 확인서(자녀기준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) |
| | 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·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| | 장애인의 자녀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·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사본 |
| 기준 중위 소득 50% 및 60% 이하 |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·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| 순직·군경· 소방관·교원· 공무원 자녀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· 순직군경, 순직소방공무원, 순직교원, 순직 공무원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| |
| | | | | 한부모가족 자녀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· 자녀기준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| |
| |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· 교육비지원확인서 | 다자녀 가족 (3자녀 이상) 자녀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· 추가서류 없음 (가족관계 증명서로 확인) | |
| 학교장추천자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·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(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) | 특 수 직 업 종 사 자 자 녀 | 환경미화원의 자녀 (사도 또는 군구 소속 환경미화원)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· 재직증명서 | |
|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· 경제적 형편이 곤란함을 증빙하는 서류 · 아동복지시설 재원 증명서 | | 군인 자녀 (중령이하)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· 15년 이상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| |
|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· 학교장 추천서 | | 경찰(해양경찰) 자녀(경감이하) 소방공무원 자녀(소방경이하)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· 15년 이상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| |